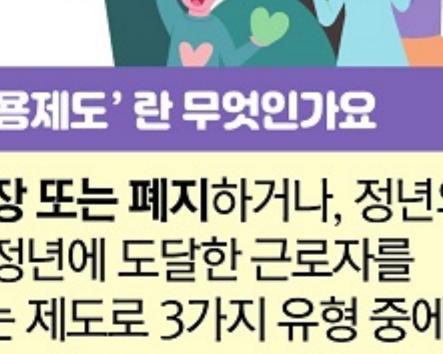


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
정년 이후에도
계속 고용할 경우

2년간 720만원을 지원해 드립니다.

2020년 1월 1일 시행
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



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?

Q 1. 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대상)

중소·중견기업 사업주를 지원합니다.

- ①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 우선지원대상기업
- ②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중견기업

Q 2.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(지원금액)

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을
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.

Q 4. '계속고용제도'란 무엇인가요

»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, 정년의
변경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
재고용하는 제도로 3가지 유형 중에서
선택할 수 있습니다.

- ① 정년을 1년 이상 연장 (정년연장형)
- ② 정년을 폐지 (정년폐지형)
- ③ 정년의 변경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
1년 이상 재고용 (재고용형)

» 취업규칙, 단체협약 등 명시적인
노사협의를 통해 도입하여야 합니다.

Q 3. 어떤 사업장에서 받을 수 있나요 (지원요건)

정년이 있는 사업장에서 계속고용제도를
도입하여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
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고용하는 경우
계속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 지원합니다.

Q 5. 신청은 언제, 어디서 하나요 (신청방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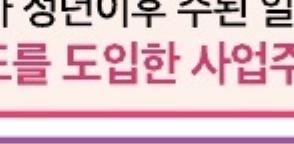
- » 매분기 말일의 다음날부터 말일까지
- » 고용센터에 서면으로 신청하거나
www.ei.go.kr(고용보험 홈페이지)에
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.

국번없이 1350


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국번없이 1350)
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

www.moel.go.kr



고용노동부
홈페이지

정책자료실 → 중장년정책
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참조

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

고령자
계속고용장려금



2년간
720만원

핵심

특

특

지원목적

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이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
정년이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지원

지원대상 기업

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소·중견기업

- 우선지원대상기업 : 제조업 500인↓ | 건설 | 운수 | 통신업 | 사업시설관리 및
사업지원서비스업 |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300↓, 기타 업종 100인↓
- 중견기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(www.mme.or.kr)에서 확인

지원
제외

- 국가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지방공기업
- 부동산업, 일반유통업, 배팅업 등

- 임금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
- 100인 이상인 기업 중 전체 피보험자수 중 60세
이상이 20% 초과

지원 요건

정년제도를 1년 이상 운영

- 취업규칙, 단체협약 상에 정년규정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, 1년 이상 계속하여
단절없이 운영

취업규칙, 단체협약 등에 명시적으로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속고용제도를 명시

- 현행 정년을 1년 이상 연장(정년연장) • 현행 정년을 폐지(정년폐지)
- 현행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1년 이상 재고용(재고용)

Q & A 계속고용제도 시행 전에 이미 정년이 지난 근로자도 지원대상이 되나요?

제도 시행 전에 이미 정년이 지난 근로자는 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으로 볼 수 없어 지원대상이 아닙니다.

Q & A 기존 취업규칙에 “회사사정에 따라 재고용할 수 있다”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지원이 가능한가요?

재고용을 희망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일부 근로자만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
인정되지 않습니다. 이 경우 “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1년 이상 재고용한다”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한 경우
변경 이후 재고용된 근로자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.

지원 대상 근로자

정년도달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 근로자 中 계속고용제도 시행 이후 정년이 도래된 근로자

지원 수준 및 신청 시기

정년 이후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(월 30만원)

피보험자의 20% 한도를 2년간 지원

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, 이후부터는 분기별 신청

신청방법

신청서 및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(고용보험 홈페이지(www.ei.go.kr)를 통해 신청 가능)

구비
서류

- ①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
- ② 월별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
- ③ 정년운영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(취업규칙, 단체협약, 인사규정 등)

취업규칙 미신고 사업장은 취업규칙 신고 후 신청(지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)

취업규칙 신고의무가 없는 10인미만 사업장은 정년을 실제로 운영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제출
(사내 인트라넷, 메일 공지 및 정년퇴직을 사유로 한 피보험자격증명서)